

## 인천공항시설관리(주) 임용 결격사유

1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6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7. 병역을 기피한 자
8. 다른 직장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·해임 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10. 인천국제공항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‘정규직 전환 방침’에 근거하여, 2017년 5월 이후 협력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
11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 공고 상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13.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.
  - 가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 
전상군경·공상군경·4.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
  - 나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>
 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6.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